

학생단체 운영규정

개정 2019.05.22., 개정 2020.04.28., 개정 2022.02.18., 개정 2024.03.01.

제1조 (의의)

학생단체는 대학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외활동의 하나로써 학생들의 개인적 흥미와 취미의 유사성 내지 동일한 목적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하여 단체 활동의 경험과 지식인으로서의 자질향상 및 개인의 창의적인 정신을 함양하는 집단적 활동의 조직체이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본교학생단체(동아리)(이하 “학생단체”라 한다)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단체의 정의)

- ① 단체란 본교 학생회 산하 부서에 있거나 또는 각 동아리 등을 말한다.
- ② 본교의 모든 학생 단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등록요건)

단체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학칙 및 학생회 운영규정에 부합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 ②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 ③ 설립목적이 타 단체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할 것
- ④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적정인원의 회원을 가질 것
- ⑤ 지도교수 승락서를 받을 것

제4조의2 (회원 구성에 따른 구분)

단체 중 동아리는 일반 동아리와 전공동아리 및 창업동아리로 구분하고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일반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5개 계열(학과)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신규 등록 동아리의 경우 동일 계열(학과)인원이 1/2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전공 동아리는 학업과 관련한 심화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창업 동아리는 창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
- ④ 전공 동아리 및 창업 동아리는 제4조의 제1호, 제2호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있다.

제5조 (등록구비서류 및 절차)

등록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생팀에 등록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5.22., 2020.04.28>

① 신규 등록

1. 학생단체(동아리) 등록서
2. 등록원
3. 지도교수 승낙서
4. 월별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5. 회칙
6. 서약서
7. 회원명부

② 재등록

1. 학생단체(동아리) 등록서
2. 등록원
3. 지도교수 의견서(단, 지도교수가 교체되었을 경우 지도교수 승낙서)
4. 전년도 활동실적 및 결산보고서
5. 신년도 활동계획서 및 예산보고서
6. 회칙(개정되었을 경우에 한함)
7. 서약서
8. 회원명부

제6조 (단체의 활동)

- ① 등록된 학생단체는 학교행사 또는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행사는 행사 5일전까지 행사계획서를 학생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05.22., 2020.04.28>
- ③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학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2., 2020.04.28>
- ④ 행사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행사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렛, 기타 유인물은 그 초안을 사전에 학생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인쇄하여 배부한다.<개정 2019.05.22., 2020.04.28>
- ⑥ 게시물은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기간을 엄수한다.

제7조 (지도교수)

- ① 지도교수는 단체로부터 추대 받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개정2012.07.16.>
- ② 지도교수는 1개 학생단체에 대하여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 및 창업동아리 포함시 2개까지 허용한다<개정2016.07.19.>
- ③ 지도교수는 소속 학생단체의 모든 학내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학생단체의 활동을 지도한다.
- ④ 회원 중 학생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학생에 대해서

제명을 시킬 수 있다.

- ⑤ 학생처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지도 교수를 지정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05.22., 2022.02.18., 2024.03.01.>

제8조 (재정)

- ① 학생단체 운영재정은 회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05.22., 2022.02.18., 2024.03.01.>
- ② 학교보조금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학생단체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본교 설립목적과 교육목적과의 부합성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
 3. 행사실적
 4.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 ③ 학생단체는 학생회에서 정한 학생회비중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단체 대표자는 매년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 보고하고 소속단체 전 회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선출)

- ① 학생단체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각 학생단체의 회칙에 따른다.
- ② 임원의 선출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명부를 즉시 학생처장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2., 2024.03.01.>

제10조 (등록취소)

-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단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생단체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학생다운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2. 학생단체의 활동이 학생회 운영 규정에 위배되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 1년간 행사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4. 기타 본 규정을 위배했을 경우
-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통폐합 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의 제한)

-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 신청이 반려된 학생단체는 향후 2년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제12조 <삭제 2022.0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